[상담일시] 2023. 4. 17 [상담유형] 전화

[**상담요청자**] 성명: OOO 직급: 책임급 소속: 원자력사업관리실

#### [상담 내용]

금품등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외부업체에서 선물을 택배로 발송을 하거나 책상에 두고간 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?

#### [상담 결과]

- 지합학금지법 위반사항 으로 판단됩니다.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금품등 수수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, 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□ 신고방법: 사전 서면 신고(사규 임직원윤리행동강령 별지5호 신고서식 활용) 단,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 거래 등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5일내에 신고(소명)

[확 인] 2023. 4. 17

[상담일시] 2023. 4. 26 [상담유형] 전화

[**상담요청자**] 성명: OOO 직급: 책임급 소속: 인사처

#### [상담 내용]

일과 관계없이 알고지내는 지인인 공무원에게 승진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 괜찮은가요?

#### [상담 결과]

- □ 지인인 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, 의례 또는 부조의
 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,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상
 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다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사교, 의례 등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일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[확 인] 2023.4.26

[상담일시] 2023. 5. 3 [상담유형] 방문

[**상담요청자**] 성명: OOO 직급: 책임급 소속: 정보보안실

#### [상담 내용]

우리회사에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방문한 감사,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물, 음료 등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

#### [상담 결과]

- □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,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,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(예: 감사, 감독, 평가 등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, 선물도 허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다만, 감사업무를 위해 방문한 공직자등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활한 감독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,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  (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참고)

[확 인] 2023.5.3

[상담일시]	2023. 5. 29	[상담유형]	전화	
[상담요청자]	성명: 000	직급: 책임급	소속: 신사업연구:	소
[상담 내용]				
사례금을 받지 않는 강연의 경우에도 신고해야하나요?				
[상담 결과]				
따라서, 사건	제10조 "사례금을 받는 ᅨ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 유권해석 사례집 참고)	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기	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 ㅏ 없습니다.	
[확 인]	2023. 5. 29	 윤리준법	팀장 구선모	

[상담일시] 2023. 6. 12 [상담유형] 방문

[**상담요청자**] 성명: 000 직급: 책임급 소속: 지속성장처

#### [상담 내용]

중앙행정기관에서 외부강의등 참석 요청을 받았는데 신고해야하나요?

#### [상담 결과]

- 정탁금지법 제10조 2항에 따라 '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'에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'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'의 범위는
  - 1)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    - ① 헌법기관: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
    - ② 중앙행정기관: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,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

[확 인] 2023. 6. 12

[상담일시] 2023. 6. 22 [상담유형] 기타

[**상담요청자**] 성명: OOO 직급: 책임급 소속: 지속성장처

### [상담 내용]

퇴직자와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되어 커피를 마신 경우에도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해야할까 요?

#### [상담 결과]

- □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(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) 제 1항에 의거,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우리 회사 퇴직자(2년 미만) 와 사적 접촉(골프, 여행, 사행성 오락 등)을 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하당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미만이면서 직무관련자인지, 법에서 명시하는 사적 접촉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, 해당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[확 인] 2023.6.22